

## 준비 서면

사건번호 : 2022 가단 6918 공유물분할

원고 : 송동일 외 1

피고 : 강용호 외 15

피고 황용준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1. 저의 분할안이, 도로 지분율이 낮아 거론할 필요도 없고, 다른 피고 남진현에게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 배정하여 자기 측 이익을 위하고 있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원고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우선 도로 지분율은, 단체 대화방에서도 공유하였지만, 도로 지분율 몇 % 라고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분할안을 작성하면서 대략적인 도로가 만들어진 후, 인터넷 지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도로 길이를 측정하고, 여기에 4m 도로 폭인 폭을 곱하여 계산된 결과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단체 대화방에서도 도로 지분율이 너무 낮으면 전체적인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받아들여 다시 분할안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할안은, 지난 9월 준비 서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22일 조정 회의 시 참석한 참석자들이 합의한 기본 규칙에 따라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원고는 제가 남진현씨와 같은 편인 것처럼 주장하며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감정싸움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피고 남진현씨와 저는 송사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입니다. 단지 앞서 말씀드린 3월 조정회의 참석자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분할안을 만들었을 뿐이지만, 원고는 이를 편 가르기 식으로 주장하며 감정적인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 원고는, 제가 원고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저는 원고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이 아닙니다. 원고 중 오충수를 포함한 일부 공유자가 강태영과의 항소를 통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은 것은 사실이며,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A-1 지역 및 B-1 지역에 대한 분할 합의 시 해당 지역의 가분할도 상 소유자와 합의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A-1 및 B-1 지역의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손실을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은

자신의 공을 폄하하고 험담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6번지 및 187번지 도로를 막고 제 토지로 만든다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며, 도로에 대한 부분은 단체 대화방에서 조정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원고 송동일은 본인이 원고 오충수로부터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오충수 위치의 일부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A-1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피고 남진현 역시 A-1 지역의 일부로 속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매입을 했는지, 얼마에 매입을 했는지, 또 그 시기는 언제인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그 기준을 본인과 타인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도 언급했지만, 제가 피고 남진현과 같은 편인 것처럼 표현하며 이익을 끌어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산 110번지의 뒤쪽으로 가면 경사가 지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한 분할안은 피고 남진현에게 좋은 토지를 주면서 제 토지는 좀 더 뒤쪽으로 배치되는 분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제가 오히려 스스로 손해보는 분할안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피고 남진현과 제가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피고 남진현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손해볼 이유가 없으며 전혀 근거도 없는 말입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분할안의 근거는, 3월 조정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의 기본적인 합의안을 토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 도로 지분이 적어 사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생각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대화방에서 도로 지분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원고는 제가 제안했던 이런 부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6번지 및 187번지 진입 도로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안을 올렸으며, 필요하면 추가로 수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올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입도로를 없앴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원고 송동일의 준비 서면을 보면, 사건의 이익 제기 주장은 자기 그룹 내에서 주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작 원고 송동일은 본인의 그룹인 A-2 뿐 아니라 소길리 110번지 전체에 대해서 분할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3월 합의에 따르면, 원고 송동일 및 오충수는 A-2 지역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토지 분할 소송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잃어버릴 뻔 한 토지에 대해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도로 지분을 6.6%로 하고, 나머지 소유자들이 도로 지분을 나눈다는

것이 합의 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고 송동일은 본인의 소유지역인 A-2 지역 외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도,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토지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주장과도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본 재판에서, 원고 뿐 아니라 피고 모두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작년부터 진행된 조정회의 및 재판에서 “전원 합의”가 이루어져야 물적 분할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무시하고 ‘원고가 분할하기 위한 분할 안’임을 강조하며, 이를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10% 이상의 토지가 상실된 상황에서 기존의 가분할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이를 계속 강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주장이며,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3월 조정회의 참석자들의 합의에서 원고 본인 역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피고는, 사실 원고의 분할안을 따르더라도 크게 피해 볼 것도 없고 크게 이득 볼 것도 없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분할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결국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합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3월 합의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서로 조금씩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도록 합시다’라는 논지를 지키려 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수 있는 안을 계속 제안한 것이고, 의견을 받으면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마치 제가 독단적으로 제 의견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편가르기를 하고 감정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원고의 행동은 합의를 함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본 피고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 ‘암묵적 동의’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피고의 행동과 같이 무례한 언행과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결국 ‘적극적 반대’를 만들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본 재판의 결과는 경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원고에게 인지시키며 재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희망합니다.